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의 구성,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지도·점검, 성과평가, 감사 등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민간위탁 추진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 라.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을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 마.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제9조)
- 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사.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제14조)
- 아. 지도·점검 및 감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 제19조)
- 자. 위탁의 취소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5. 3. 3. ~ 2015. 3. 23.(20일 간)
- 3) 행정규제심사 : 위탁 취소 조건에 있어 구체적인 사유로 규정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안 제20조에 반영함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안 제6조에 반영함
- 5) 부패영향평가 : 위원의 연임, 제척 근거 규정 및 위탁기간 연장, 사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명시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에 일부 반영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운영상황의 평가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 공무원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 공무원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해

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단체나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

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5. 협약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

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성과점검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회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위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재위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위탁 추진 시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과 제17조에 따른 감사 및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재위탁 여부의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기준 정립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비용 발생사항이 없음

4. 작성자

정책기획담당관 정책평가팀 이병찬(☎02-330-1332)